

제43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7월10일(금)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6)
2.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6.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6)
7.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6)
8. 집단소송법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0)
9.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1)
10.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4)
1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9)
12. 집단소송법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4)
13. 집단소송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7)
14. 집단소송법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7)
15. 집단소송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4)
16. 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9)
17. 집단소송법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2)
18. 집단소송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5)
19. 집단소송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0)
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4)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7)
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5)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13)
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8)
2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4)

상정된 안건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6) 4
2.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4) 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 27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27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27

(10시02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입니다. 법안1소위에 선임되신 위원님들 환영합니다.

그러면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간에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입니다.

정무위 위원으로 있다 다시 법사위에 복귀하게 되었고 국민의 삶과 또 정의로운 사법 체계 개선을 위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점을 깊이 유념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법안을 만드는 데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아직도 안 들어오고 계시는데 국회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의 본래 의무인 법안심사를 방기하는 것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방기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다음 법안1소위 회의 때는 꼭 오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제 오른쪽에 계신 김남희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제가 하반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새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1법안소위에도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법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계속 이슈된 여러 법안과 관련돼서 많은 시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시민들과 지금 다양한 간담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과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사법체계 개선에 있어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의 전횡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남양주병 김용민 위원입니다.

오늘 하반기 국회 1소위가 처음 열렸는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셔서 매우 유감입니다. 박규택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이 1소위로 배정이 되셨는데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잘 논의해서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특검법부터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검법도 잘 논의해서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잘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사위가 쟁점 있는 법안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법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법안과 그리고 민생법안 놓치지 않고 꼼꼼히 함께 잘 챙기겠다라는 각오의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법사위가 예전에는 인기 없는 상임위였다가 한동안 인기 있는 상임위였다가 최근에는 다시 인기 없는 상임위로 바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이 과중한 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토론하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해서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아마 업무는 엄청나게 과중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고 아까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가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저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건 좋은데 이 자리에서 함께 민주적인 방식으로 토론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을 조금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균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광주 광산갑 박균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법안 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22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여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온 국민의 열망이었던 검찰개혁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번 1소위에서는 아마 검찰개혁 법안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온 국민이 피해자였습니다. 온 국민들께서 검찰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된다,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존경하는 김승원 간사님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하고 같이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1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법사위 통과된 많은 민생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딜레이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의 협조 거부로 본회의 통과가 많이 늦춰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안심사소위도 열심히 하고 법사위도 열심히 법안들을 마련해서 본회의까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2대 후반기 법안1소위 첫 회의니까요 앞으로 법안1소위에 출석하여 수고해 주실 기관 측 분들의 인사말씀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진수 법무부차관님 나오셨지요?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입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앞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충실한 검토와 함께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님이시지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입니다.

충실한 법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6)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언론인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6)
 2.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4)

(10시12분)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2건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자료 의사일정 제1항·제2항, 강득구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입니다.

목차에서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수사대상에 ‘감사 방해행위 등’을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파견요청기관을 확대하고 파견공무원의 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공소유지변호사 또는 공소검사를 신설하고 파견군검사의 공소유지권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수사기간 만료 전에 피이첩 기관에 재이첩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3대 특검과 사전 협의 및 3대 특검에 대한 수사기록 등 제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가. 수사대상에 ‘감사 방해행위 등’ 추가 및 ‘관련 사건’ 정의 확대입니다.

왼쪽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수사대상에 ‘감사 방해행위 등’ 추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수사를 현행의 지연·은폐·비호하는 내용에서 방해하는 내용까지 수사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고 공무원이 감사를 방해·지연·은폐·비호하는 행위를 새롭게 수사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 사건’의 정의를 확대해서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오른쪽입니다.

먼저 수사대상에 ‘감사 방해행위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형사사법체계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그 수사대상의 확대는 추가하려는 수사대상 사건의 중요도,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검 수사기간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연장돼서 26년 7월 24일까지인데 김승원 의원안에 따라 30일이 추가로 연장되더라도 공포 후 30여 일의 짧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수사기간 연장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 특

별검사는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간 만료일인 7월 24일의 3일 전인 21일까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되는데 다음 주에 본회의 의결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공포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4일 이전에 공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2쪽입니다.

그리고 종합특검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항을 법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는 취지일 경우에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사대상에 대한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개정안을 통해서 그러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관련 사건’ 정의 확대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행 제2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관련 사건’의 정의는 형사소송법 제11조의 4호에 규정된 정의랑 동일한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범인도피죄를 ‘관련 사건’의 정의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 실무에서는 범인은닉으로 송치가 되었으나 그 실질을 범인도피로 판단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의율 변경 문제로 보아 단순히 죄명을 변경하는 실무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법원에서도 공소장 변경 없이도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가 범인도피죄를 관련 사건으로 보아 수사개시를 할 때 절차상 하자 발생을 없애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종합특검에서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요. 수사대상을 추가하는 내용과 ‘관련 사건’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파견요청기관 및 파견공무원 수 확대입니다. 강득구 의원안과 김승원 의원안이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왼쪽입니다.

파견요청기관 확대는 파견요청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파견공무원 수 확대는 현행 13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 수를 150명 이내로 확대해서 20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김용민 위원으로부터 종합특검에서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의심했던 일들이 밝혀지고 있어 수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파견공무원의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사기간

연장 여부와 연계해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기한은 7월 24일까지로 파견공무원의 파견이 실제로 이루어질 시기까지를 고려하면 한정된 수사기한으로 인하여 파견공무원이 종합특검에서 유의미한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종합특검에서는 파견요청기관 확대 및 파견공무원 수 확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소유지변호사·공소검사 신설 및 파견군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입니다.

왼쪽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강득구 의원안은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가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 공소유지변호사를 특별수사관 중에서 지정하여 제2조 제1항 각 호 사건의 공소유지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소검사 신설은 김승원 의원안입니다. 특별검사가 2배수 이내의 공소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하면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소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의 공소유지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강득구 의원안과 김승원 의원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직위는 공소유지변호사와 공소검사, 임명·지정권자는 특별검사와 대통령, 자격요건은 특별수사관과 5년 이상 법조경력, 그리고 인원수는 강득구 의원안은 규정하지 않고 있고 김승원 의원안은 10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조문 위치는 제6조의2와 제8조의2고 임무는 공소유지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권한·의무는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와 특별수사관 규정 준용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공소유지변호사·공소검사 신설과 관련해서 강득구 의원안의 공소유지변호사는 현행법 제8조제4항에서 특별수사관은 이 법에 따른 수사대상 사건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특별수사관 중 공소유지변호사로 임명된 자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특검법 등의 체계에 부합한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승원 의원안의 공소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로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특별수사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체계에 부합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소유지변호사는 법조경력을 요하지 않고 인원수 및 신분보장, 후임 지정절차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있고 공소검사와 관련해서는 법조경력 및 인원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분보장, 후임 지정절차 등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공소유지의 중요성에 비추어 규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소유지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김건희 특검법 개정 사례와 같이 특별검사보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파견군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입니다.

개정안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파견검사뿐 아니라 파견군검사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在廷)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6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소속 공무원인 군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게 될 경우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 등의 재정 없이도 파견군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종합특검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서도 이미 군검사를 파견받고 있으며 파견군검사는 파견공무원 수에 산입되어 이미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종합특검과 내란 특검에서 각각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 의견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종합특검에서는 공소유지변호사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내란 특검은 공소검사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파견군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종합특검은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수사기간 연장 및 수사기간 만료 전 피이첩 기관에 재이첩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왼쪽 내용입니다.

김승원 의원안입니다. 대통령 승인을 요하는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특별검사 제도에서 수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원칙적 수사기간을 설정하되 예외적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그럼에도 수사기간이 부족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통하여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최소화하면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인력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기소를 완료하여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역대 수사기간 연장 사례를 살펴보면 3대 특검법의 사례가 유일한데 대통령 승인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 방식이 아닌 대통령·국회 보고를 통한 수사기간 연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 승인을 통하여 수사기간의 연장을 2회나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이라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특별검사에 대하여 대통령이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우려가 없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1쪽 두 번째, 재이첩 근거규정 신설 관련 내용입니다.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 중 특별검사가 수사·기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이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이첩 근거규정 신설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 문언상 특별검사가 기소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개정안은 이첩한 수사기관으로 재이첩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법적 의미가 명확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3쪽입니다.

그리고 제6항 본문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사 미완료, 기소 여부 미결정 사건의 귀속처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일원화하고 있는 제6항 본문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법 및 역대 개별 특검법은 수사 미완료, 기소 여부 미결정 사건을 당초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2025년 9월 3대 특검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안 논의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일원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라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수사기간 만료 전 개별 수사대상 사건이 종합특검의 재량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으로 과편화하여 나누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3대 특검과 사전 협의 및 3대 특검에 수사기록 등 제출 의무화입니다. 김승원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3대 특검과 사전 협의 의무화는 종합특별검사 등은 3대 특검의 결정을 반복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3대 특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대 특검에 수사기록 등 제출 의무화는 3대 특검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수사대상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 등을 종합특검에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3대 특검과 사전 협의 의무화입니다.

현행법에도 종합특검은 3대 특검과 협력하여야 하고 3대 특검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개별 특검법은 모두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특검이 독립하여 수사·기소를 수행하면서 3대 특검과 다른 결론을 도출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종합특검의 독립적 직무수행 규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에 수사기록 등 제출 의무화에 대해서는 종합특검법이 아닌 3대 특검법 개정 사항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종합특검법은 종합특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3대 특검에 대한 종합특검의 자료제출·수사협조 요청 및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 신설 내용을 규정하거나 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먼저 3대 특검과 사전 협의 의무화에 관해서는 내란 특검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종합특검은 특별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쪽, 3대 특검에 수사기록 등 제출 의무화는 내란 특검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종합특검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9쪽입니다.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 신설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3대 특검에 대한 수사기록 등 제공 특칙은 3대 특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수사기록 등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록 등을 열람·복사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제공받는 수사기록 등을 제18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특별검사에게 제공한 수사기록 등에 대해서 3대 특별검사는 3대 특검법상 이를 검찰총장에게 인계할 각 의무를 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21조의2 내용은 상설특검법 및 역대 개별 특검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조문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가 3대 특별검사의 모든 기록을 제공받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판장에게도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대 특검법 제5조에서는 특별검사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특검법 제21조제3항에서는 ‘특별검사등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특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대 특검이 수사기록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3대 특검의 독립적 직무수행 규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재판장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등사 특칙입니다.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특별검사는……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 제3항이 입법화될 경우 공소유지 사건이 종합특검의 공소유지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3대 특검의 공소유지 사건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또 재판장이 어떤 사건의 재판장인지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1쪽,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종합특검은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36쪽, 부칙입니다.

강득구 의원안 및 김승원 의원안 모두 부칙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5년 9월 3대 특검법 개정 당시 수사대상, 직무범위 등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사대상 추가 및 ‘관련 사건’ 정의 확대 부분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은 국회가 폭넓은 재량을 통해 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개정안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건이 현행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하자를 치유하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에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으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신설과 공소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특별검사가 특별수사관 중에 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검법상 특별수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와 달리 법조경력에 제한이 없어 중요 사건 공소유지에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원 의원님 안에서는 공소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소유지변호사와 달리 특별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5년의 법조경력을 요건으로 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명칭의 측면에서 특별검사의 또 다른 보조기관인 특별검사보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소검사는 특별검사보와 임명 절차, 지위 등이 유사하지만 법조경력이 낮고 업무 범위는 공소유지에 한정함에도 특별검사보를 지휘하는 특별검사에 준하여 공소검사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공소유지특별검사보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정안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은 의미가 불명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보에 준하여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동조 4항에 이 법에 규정된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검사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유지와는 무관하므로 위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 신설 부분은 특검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것이 원본을 제공한다거나 원본 제출의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특검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형사소송법 등 현행 법률에 수사·재판 중인 기록의 원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선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견요청기관 및 파견공무원 수 확대, 파견군검사 공소유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혹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배부가 되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의견서에 대해서는 복사하거나 아직 배부가 되지는 않았습다.

○소위원장 김승원 혹시 가능하시면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조문안이나 내용 등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부분을 추려 가지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법원행정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수사기간, 파견기관 및 파견공무원, 공소검사 제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2차 특검법의 취지, 진상규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강득구 의원안 중 공소유지번호사의 신설 부분 또 수사기록 등에 관한 특칙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법조정력을 요하지 않는 점,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적정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수사기록 등에 관한 특칙도 개정안은 특별검사의 열람·등사 신청 등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이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송기록의 관리에 관한 재판장의 재량을 현저히 축소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되 우선 토론의 대상을 3페이지 수사대상 부분부터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대상에 ‘감사 방해행위’ 추가 및 ‘관련 사건’ 정의 확대 규정인데요. 제가 이 회의를 준비하면서 관련 기관에 수사대상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예컨대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있어서 법원에서 일부 기각을 하면서 그 사유에 수사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유를 달아서 기재했다고 해서 수사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문구 수정이라든가 아니면 자구 추가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련된 문건은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감사 방해행위’ 넣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위원** 이 부분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은정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동의하시고요.

윤석열 정권 때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쌍끌이 저인망식 감사라든가 또 기획감사가 굉장히 횡행했었고 지금 여러 수사를 통해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특검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갖고 수사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사건’ 정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특검법을 만들 때 예컨대 이중·삼중으로 수사가 확대되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췄다라고 판단을 하고 특검법을 통과 시켰는데 법원에서 관련 사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사례가 왕왕 나왔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도 그 점에 관련해서 좀 ‘관련 사건’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우선 위원장으로서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 찬성하시나요?

○**김한규 위원** 죄송한데 제가 전체적으로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감사는 어떤 기관의 감사인지 정의가 어디에 들어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 복사본 배부를 해 주시면……

○**전문위원 최기도** 개정안에는 특별히 어떤 감사인지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감사’라는 용어만 들어가 있고요.

○**김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수사 및 감사’라고 하면 수사라는 것은 공식적인 수사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감사는 감사원의 감사도 있고 각종 공공기관의 감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민간기관의 감사도 있는데 형사법령에서는 범위가 좀 특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최기도** 자료 7쪽에 보시면 개정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에 ‘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 했는데 감사가 어디 기관의 감사인지가, 감사원의 감사로 특정할 건지 아니면 부처 내에서 하는 자체적인 감사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지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한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특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감사원의 감사로 좀 더 명확하게 할까요?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관계 중에 감사원 감사 말고 현재 수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혹이 제기된 게 혹시 더 있나 해서 여쭙보는 건데요.

○**박은정 위원** 감사원 감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감사원 감사 외에 문제가 없으면 감사원의 감사라고 특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을 바꿔서.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 이게 7쪽 15호와 관련된 것인데요. 원래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이 문구를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지연·은폐·비호하거나’ 이렇게 개정된다는 것인데요. 일단은 수사도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라고 이렇게

특정을 했고 아마 개정안의 감사도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감사로 보입니다.

일견 감사원의 감사가 주로 대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국방부에 의한 감사라든가 혹은 다른 부처에 의한 감사가 1호부터 14호 사이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검토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한번 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감사원 감사만 해당된다고 하면 김한규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 감사로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한번 보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법안의 개정을 요구한 특검에도 문의를 하고……

우선 법무부차관님,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1호부터 14호까지의 수사 및 감사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더 알고 계시는 정보 같은 게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특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법무부에서는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더 추가로 알고 계신 정보 같은 건 없으시다는 거지요.

○**박은정 위원** 우선은 감사원 감사로 특정을 하고 국방부 감사나 다른 공공기관의 감사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되면 그것은 그 기관에서 수사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감사원 감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하는 것은 아마도 감사원 감사 지금 최근에 하고 있던 그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좀 더 저희 회의시간 중에 추가로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의견 중에는 감사원 감사에 한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도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페이지짜리 배부해 드린 게 있는데요. 거기 개정안을 보면 10호의 현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쪽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10호에 보면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을 비롯한 각종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12호를 보면 현행 규정은 ‘김건희가’라고 해서 주어로만 등장했는데 개정 사안에 ‘윤석열, 김건희가’, 김건희 씨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개입한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주어를 ‘윤석열’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15호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1호부터 14호까지의 감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3항 1호를 보시면 대상 범죄, 관련 사건 범죄에 공무상비밀누설죄·범인도피죄, 두 가지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추가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었고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이 정도 기입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사하고 의결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항입니다.

파견요청기관 및 파견공무원 수 확대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특검 수사기간이 7월 24일 종료이고 저희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만약에 한 번 한다면 30일인데 그 안에 파견요청기관과 파견공무원 수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면 너무 짧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검의 기한이 7월 24일까지이고 저희가 만약 이 개정안대로 1회 연장을 더 허용한다면 30일 더 추가로 수사할 수 있을 텐데 그 기간을 염두에 두고 요청기관과 공무원 수를 20명을 더 확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너무 급하지 않은가, 너무 짧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말씀해……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지금 파견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안인데 현재 파견된 공무원 수가 혹시 확인된 게 있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기도** 130명 다 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민 위원** 다 차 있어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김용민 위원** 지금 그러면 특검에서는 20명이 추가로 신속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인 거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일 연장하면 파견 요청하고 파견받아서 업무에 착수하더라도 30일이 금방 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이 필요하다고 지금 특검은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필요성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뒤에 연장도 30일 연장할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연결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30일 연장은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30일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20명에 대해서 확대해서 또 파견받고 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다만 또 특검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이게 20명을 늘린다고 해서 20명을 전부 다 파견받는 것은 또 아니니 그런 의미에서는 특검에게 일정 부분 재량을 주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은 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저도 한번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남희 위원님, 혹시 의견 어떠신가요? 저희가 증원을 해도 꼭 150명을 충원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 특검에게 어느 정도 재량을 주어서 필요한 10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어쨌든 이렇게 법안이 논의되는 이유가 지금 특검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논의가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의 기간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강화할 생각이라면 인원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저도 130명이 다 있다는 얘기는 오늘 전문위원께 처음 들었는데 사실은 종합특검 수사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만큼 윤석열·김건희의 불법행위가 많았다는 것이 되고 이 수사를 다 하려면, 사실은 제가 초반에 이게 130명 가지고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은 좀 들었거든요. 특검이 130명 풀로 채워서 하다가 아마 인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요청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130명 풀로 차 있는 상태라면 김용민·김남희 위원님처럼 여지를 한번 주는 것이 좋겠다, 여력을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박균택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박균택 위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혹시 박은정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한 달짜리잖아요. 지금 이게 한 달짜리인데 20명 더 늘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견검사 수는 10명을 더 늘리는 거고 이게 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효성 면에서 어떤지 제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한 달 더 수사하겠다고 이 인원을 이렇게 늘리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수사 연장을 하는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조금 더, 날짜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날짜가 부족해서 마무리 못 하니까 한 달을 더 주는 건 괜찮은데 그 한 달 동안 더 확대해야 되는, 사람을 더 늘려야 된다, 20명하고 검사 10명을, 이 부분은 저는 좀 약간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여기 파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파견공무원만 20명을 더 늘려야 된다……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 내용인데 혹시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하던가요, 특검 측에서?

○전문위원 최기도 특검 측, 9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9쪽 아래쪽에 있는데 종합특검에서는 종합특검 특성상 정부 각 부처에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해당 기관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파견공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견공무원 상한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국방부 쪽의 파견공무원 한 10여 명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요청으로 읽혀지기도 하는데 맞습니까? 왜냐하면……

○전문위원 최기도 파견공무원은 국방부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런데 여기 추가된 게 국방부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요청기관에 국방부가 없는데 국방부를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파견공무원은 모든 대상 부처에 대해서 포함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읽혀지는 게 국방부를 추가하면서 20명을 더 늘려 달라고 하니까, 이 이유가 국방부 쪽의 공무원을 더 파견받고 싶어서 그런 의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방부에 한정해서 파견공무원을 추가 요청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고?

○전문위원 최기도 예.

○소위원장 김승원 다양하게 하되 어쨌거나 국방부를 추가했다는 거는 그쪽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예.

○박은정 위원 그러면 국방부 부분은 제가 그것 놓쳤는데 국방부의 파견공무원이 더 필요하다면 파견공무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저도 조금만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파견검사를 늘리는 건 아닌 거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단지 파견공무원을 130에서 150으로 늘리는 것과 기관을 국방부 더 추가하는 것……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보니까 내란 특검이 파견공무원이 140명…… 10페이지에 있는데요 내란 특검은 파견공무원이 140명 이내, 김건희 특검은 140명 이내인데 아무래도 종합특검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 3대 특검을 합쳐서 후속 수사를 하는 특검이다 보니 140명을 했던 내란이나 김건희 특검보다는 좀 더 많은 게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은정 위원 그러면 파견……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말씀하십시오.

○박은정 위원 파견검사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 파견공무원 수만 지금 늘리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파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공무원 수는 20명의 여유분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입니다.

공소유지변호사와 공소검사 신설 및 파견군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입니다.

과건군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 이거는 저는 큰 의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공소유지변호사와 공소검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소유지변호사는 예전 형사소송법에 있었던 제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법률이라든가 또 현행 형사소송법과 크게 충돌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자격요건에 특별수사관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법조경력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고 저도 그 의문 제기는 타당하다고 보여져서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특별수사관’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여기 특별수사관 중에 법조경력이 있는 특별수사관들이 혹시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전문위원 최기도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무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5년 이상 법조경력 있는 수사관들은 있겠지요.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이. 그걸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12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12명 중에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소유지변호사 혹은 명칭이야 공소검사든 아무튼 선임을 하면 아까 기관에서 의견 주신 대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은 방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습니까?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차관님, 지금 3대 특검 그중에 내란 특검으로 일단 한정해서 질문을 드리면 내란 특검에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인원수가, 재판 상황에 따라서 일부 인원들이 검찰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인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대략도 모르시나요? 10명은 넘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10명 넘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김건희 특검도, 그러니까 3대 특검에 지금 공소유지 등으로 나가 있는 인원이 약 60여 명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3대 특검 모두 합쳐서 60여 명?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용민 위원 그러면 특검별로 하여튼 10명은 다 넘을 가능성이 높네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는 강득구 의원안과 위원장님 안이 잘 절충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유지변호사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체계상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법조경력에 대한 자격요건 5년 이상 정도로 부여하고 그다음에 공소유지변호사를 몇 명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같은 것들이 강득구 의원안에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안의 '10명 이내' 이런 것들을 같이 중첩해서 하나의 대안 문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아까 공소유지변호사가 조금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신 분이 차관님이시지요,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것 다시 한번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강득구 의원님 안에서는 지금 특별수사관 중에 변호사를 지정해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이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소유지변호사의 명칭으로 제도를,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의결을 하신다면 김승원 의원님 안에 들어가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절충안을 지금 김용민 위원님께서 내셨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내용이 보충된다고 한다면……

○김용민 위원 그런데 차관님 지적하신 게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수사관 지위와 중첩이 되면 사법경찰관하면서 공소유지변호사가 중첩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적을하신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되면 사법경찰관 지위를 없애주는 게 체계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것이 법 전체 체계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말씀도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차장님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명칭과 관련해서 행정처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법률체계에서 용어는 통일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예전에 있을 때는 고소·고발한 자가 재정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경우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검사를 대신해서 법원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신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분에도 공소유지변호사가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원래 들어온 취지는 검사의 객관적인 소송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소유지변호사를 예외적인 경우에 선임하도록 했었는데 과연 이 요건에 들어맞는가 싶어서 용어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디테일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네요. 그렇다고 공소유지검사라고 하면, 그 양반은 검사는 아닌데.

차관님, 혹시 말씀……

○법무부차관 이진수 용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2008년도에 폐지되기는 했는데요. 지금 특검법상 특별검사가 계시고 특별검사님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보가 계십니다. 그런데 검사라는 명칭을 쓰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결국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검사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과 공소유지를 다 포괄하는 의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따르면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분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법 전체 체계에서 용어상 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아까 공소유지특별검사보 등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체계상 여의치 않다고 하신다면 거기에 공소검사보다는 오히려 공소유지변호사 등이 지금 검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에 비추어 봐서는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공소유지변호사가 낫다는 말씀이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는 공소유지특별검사보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특별검사보가 특검법상 차지하는 지위와 임명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 명칭은 위원님들 저에게 혹시 이것도 위임을…… 명칭은 위원장에게 위임이 안 되고 회의 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이 안 계신 분이 계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의 파견군검사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항입니다. 수사기간 연장 및 수사기간 만료 전 피이첩 기관에 재이첩 근거규정 신설입니다.

수사기간 만료 전 피이첩 기관에 재이첩은…… 글쎄요, 이거는 현행 제도라든가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법률에 넣어 달라고 한 건데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연장,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각 30일 연장으로 자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 저도 찬성하고요.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개정안에 30일 연장……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죄송하지만 바로 직전 논의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눈에 들어와서요. 지금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에 대해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가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추가하는 건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공소유지변호사를 우리가 신설을 하면 여기에 공소유지변호사도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그 앞에, 그거 하라고 공소유지변호사 혹은 공소유지특별검

사보가 신설이 되는 건데 거기에 근거규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봤습시다라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김용민 위원** 사실 이 뒤 조항도 필요가 없긴 한데, 기존 특검법에는 안 들어갔던 조항인데 최근에 특검법에 들어가기 시작한 이유가 피고인, 정확히는 윤석열과 법조인 출신의 피고인들이 이 부분을 계속 법정에서 문제를 삼아 왔거든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랬지요. 특별검사가 직접 나와라 그렇게 요청을 했지요.

○**김용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조항이지만 집어넣었던 것이라 아마 공소유지 변호사도 필요하면 당연한 조항이지만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나중에……

○**박은정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은정 위원님 동의하신다고 그랬고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만약에 공소유지변호사나 공소검사 제도가 들어오면 체계 정합성을 위해서 다른 조문도 살펴볼 조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서 결국에는 소송 수행이 다 적법하다는 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더 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하도 그쪽에서 윤석열 변호인 측이 난리를 치니 확실하게 법률에 넣는 것이고 체계 정합성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이첩 규정은 저희는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전문위원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특검의 어떤 요청 사항이라든가 또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23쪽에 보시는 것처럼 종합특검에서는 수사기간 연장 그리고 재이첩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외에 특별히 더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나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23쪽을 보시면 특별검사의 수사관할이 전속관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다수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이첩해서 현실적으로 특별검사가 이를 수사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종합특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 기간 만료 후 이를 전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이첩하도록 하는 건 수사의 효율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재이첩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으면 좋겠다

라는 걸 종합특검의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간 만료가 이제 30일, 40일밖에 안 남아서 특별히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그러면 개정 사안에 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항입니다.

3대 특검과 사전 협의 및 3대 특검에 수사기록 등 제출 의무화 규정입니다.

지금 아마 3대 특검과 종합특검 사이에 수사를 각자 또 추가로 하다 보니 서로 판단에 있어서 상이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 협의 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지는 저도 약간 의문은 드는데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에 없는 추가적인 정보가 혹시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먼저 말씀드리면 26·27쪽에 보시면 종합특검과 내란 특검에서 각각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내란 특검에서는 3대 특검 사전 협의 의무화 그리고 수사기록 제출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종합특검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의견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추가적인 의견은, 정보는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내란 특검에서는 두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데 종합특검에서는 특히 27쪽에 보시면 3대 특검의 공소유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종합특검은 3대 특검과 다른 별개의 수사기관이므로 수사 중인 자료를 3대 특검이나 기타 수사기관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기관에도 조건 없이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사실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 수사에 기초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더 하는 것인데 그래서 최종 결정을 종합특검이 할 때는 협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이걸 꼭 법률에 의무화 규정을 뒤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28조 4항을 보면 수사 중인 기록에 대해서 3대 특검이 요청을 하면 종합특검의 수사기록 등이 3대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수사의 신속성이라든가 기밀성에 비추어 봐서 이것도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지적하셨나, 법무부차관님께서…… 이 수사기록이 원본인지 혹은 원본 다음에 등본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열람·등사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사기록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원본을 줘야 되느냐 등본을 줘야 되느냐 명확히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 관련해서는 박은정 위원님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떠실까요?

○박은정 위원 일단은 3대 특검하고 종합특검이 수사가 방향이 같고 통일된, 일관된 결론—왜냐하면 사실관계가 같을 테니까요—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전제하에서 보면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이 완전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문화시켜 주면 양자 간의, 기관 서로 간의 어쨌든 갈등이나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기록 제출 요청 같은 경우에는 3대 특검이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종합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이 의무화하게 되면 그 자료가 나중에 수사 중인 경우에 종합특검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는 종합특검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28쪽, 3항은 개정안으로 수용하시고 4항은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의견인……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꼭 포함하지 않는 것보다는 요청이 가능한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데, 일단은 저는 전반적으로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내란 그다음에 김건희 국정농단 등에 대한 수사의 완결성과 통일성,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항은 ‘협의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는 저도 긍정적으로 박은정 위원님과 함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4항은 저는 약간 부정적인데요. 4항은 개정안에는 포함 안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협의하여야 된다’, 협의하고 종합특검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으로, 박은정 위원님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박은정 위원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항입니다.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 신설입니다.

이것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에 대하여 3대 특검이 갖고 있는 수사기록 등을 제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열람·복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저는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에 기초해서 추가 수사 혹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필요하지 않은가, 필요한 조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원활히 협조가 잘 안 되니까 이걸 좀 넣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는 드는데요. 역시 수사를 많이 경험하신 박은정 위원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다시 한번……

○소위원장 김승원 이것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에 대해서 3대 특검이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련된 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제공할 의무가 있고……

○박은정 위원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수사기록 제공을 요청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종합특검이 제출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그게 4항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종합특검이 요청했을 때 3대 특검이 수사기록을 제공하여야 되는가 그 문제고, 이거는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 수사가 종료된 것은 종합특검에 요청하면 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박은정 위원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종합특검 입장에서는 그

것을 중복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대 특검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미 수사가 완료가 됐고 재판 중인 사항이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네요. 3대 특검 수사기록을 보고 불필요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중복수사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은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3대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지요, 종합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게 압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청을 할 것인지 그것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혹시 의견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항 관련해서는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글썽 이게 수사 혹은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것인데 안 줄 이유가 있을까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재량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무로 규정하게 되면 재판에 미치는, 공판절차 진행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개인정보라든가 수사기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판장이 그걸 재량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제 생각에는 법원에 있는 기록은 이미 3대 특검에서 수사해서 법원에 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대 특검은 최소한 등본은 갖고 있겠지요, 복사본은. 그러면 법원이 갖고 있는 기록도 다 3대 특검에서 올라온 건데 저희가 1·2항을 만약에 개정안에 포함시키면 종합특검이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다 받아 볼 수 있는데 법원이 이것도 또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줄 것과 안 줄 것을 하는 것이 절차의 무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말씀에 따라서 3대 특검한테 받으면 될 기록을 굳이 법원에서 받아야 되는지, 받는다 하더라도 재판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 행정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김용민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게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면 법원에 원본이 지금 제출돼 있고 특검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사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무조건 열람·등사를 허용하게 되면 작은 기록도 아니고 재판을 진행해야 될 때 증거 기록을 재판부에서 검토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김용민 위원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해서 재량이 있잖아요. 이 정도 재량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았는데.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할 수 있다’, ‘한다’라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한다’라는 정도만 해도 이렇게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저희들이 판단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하야야 한다’가 아니라 ‘허가한다’라고 하는……

○**김용민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한다’ 이렇게 이 정도로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김남희 위원** 예,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용민 위원** 그 정도면……

○**소위원장 김승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구를.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3항 문구를 ‘하야야 한다’라는 문구보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한다’ 그런 정도.

○**소위원장 김승원** 한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사실 법원의 바람은 ‘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좀 강하시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허가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법무부차관님께서 21조의2 1항 개정안을 원본이나 등본이나 이걸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셨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어떻게 바꾸자는 말씀이실까요, 이 단어를?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하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니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강득구 의원님 안에서는 원본을 전제로 해서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가 원본 제출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수사기록이라든지 공소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조문 대안까지는 아직 마련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른 예를 찾아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것은 저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나중에 같이 협의해서 정확한 단어를, 문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도 비슷한 구조인데 검사가 수사기관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건기록을 요구할 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문구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등본?

○**김용민 위원** 예. ‘사건기록의 등본을’이라고 표현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사건기록의 등본(이하 수사기록 등)’.

○**김용민 위원** 형사소송법 197조의3 1항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시군요. 저도 타당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한번……

○**김용민 위원** 차관님, 어떻습니까, 그 정도 하면?

○**법무부차관 이진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정조치요구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위원** 거기도 ‘등본’이라고 돼 있으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사건기록의 등본’ 그 문구가, 단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일부 문구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항입니다.

부칙은 특별한…… 이것 뭐가 필요한가요?

○전문위원 최기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적용례 같은 게 필요하면 저희가 자구 정리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자구 정리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의결할 수는 없지요, 네 분이라?

○김용민 위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일단 형사소송법 하고 그다음에 끝나기 전에 의결을……

○김용민 위원 아니면 잠시 정회하고 그 부분을 결정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위원님들과의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 특검법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우선 13쪽, 공소유지변호사인가 공소검사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소유지변호사 명칭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임명권자는 특별검사 그다음에 자격요건과 인원수는 5년 이상 법조경력, 10명 이내 그리고 임무는 수사대상 사건의 공소유지,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문에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리고 3쪽, 수사대상에 ‘감사 방해행위’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감사를 감사원의 감사로 특정·제한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논의한 결과 1호부터 14호까지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각 행정부처에서 벌어진 불법 감사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에 한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그런 감사는 다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김한규 위원님께서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잠깐만요, 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김한규 위원 그런데 이 표현이, 감사를 방해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감사가 수사대상이라는 게 아니라 15호를 보면 감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는 게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불법적인 감사가 있어서 그게 수사대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약간 취지가 다른 거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1호부터 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 때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보다는 직권남용이 맞겠지요. 윤석열 정부 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것에 대한 수사 혹은 감사일 텐데 수사는 예컨대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이겠지요, 그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민단체라든가 혹은 제삼자가 감사를 요청했을 때 그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은폐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사대상이 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정책위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라고 제안하지 않고 일단은 감사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항 그리고 라항, 마항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조문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위원님께서도 하시면……

○전문위원 최기도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논의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및 2항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법문과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11시36분)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3항부터 5항까지 3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내용이 많아서요 저희가 총 21개 쟁점을 잡았고요 앞의 1번부터 4번까지가 핵심 쟁점 사항입니다. 우선 저는 4번까지, 20페이지까지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안은 3건이고요, 제가 편의상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차규근 의원안, 김한규 의원안이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경찰 수사 문제 발견 시 보완수사요구 등의

강제 방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수사를 강제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사문화된 여러 가지 시정조치요구라든가 이의신청 제도 이런 현행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모든 수사기록을 전자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게 어떠냐 이런 보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수사권 일원화입니다.

3개 안 모두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 안에 현행 196조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조항입니다.

1항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직접수사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2항 ‘검사는 197조의3제6항 등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보완수사에 대한 근거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안 모두 196조의 내용을 삭제하면서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196조 자체를 삭제하고 있고요. 다른 2개 안은 다른 내용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형사소송법 ‘수사’ 장에서 검사의 내용들을 모두 빼고 있습니다. 피의자 출석요구·신문, 체포·구속, 압수수색, 검시 등 개별 규정에서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삭제하는 것이 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소청을 설립하고 검찰청을 폐지했듯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입법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범죄 발견을 위한 수사력 약화의 예방이라든가 적정 절차를 위한 상호 견제, 균형을 위한 제도 설계를 면밀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3개 안 모두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인 이상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서 수사보완 절차를 두텁게 해서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상대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권의 위법·부당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관계인들의 통제 수단도 보완할 필요가 없는지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소청의 검사와 공수처 검사 그리고 상설특검은 서로 직무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개별법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의원님들 안에서는 형사소송법 이 법에 넣고 있지만 법체계상 공수처법이나 상설특검법 등 개별 특검법에 넣어서 규율하는 게 법제 원리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삭제하지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그리고 시정조치요구권, 검사의

재수사요청권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위법·인권침해 등을 검사가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불송치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하도록 형소법은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완수사요구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7조의2입니다. 검사는 송치사건이나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사경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데요, 사경은 검사의 이런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사경에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는 여기서 징계요구를 삭제하고 ‘직무배제, 교체’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안에서는 현행 그대로 두면서 ‘직무배제, 교체, 징계요구’ 교체권을 더 넣는 안이고요.

다음에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는, 현행은 보완수사기간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그리고 김한규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1개월 플러스 1, 그래서 2개월 안으로 보완수사기간을 지정하고 있고 김한규 의원안에는 필요한 경우 타 수사관서에 사건을 보내도록 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조치요구권 보겠습니다.

제197조의3, 10페이지입니다.

현행은 ‘시정조치요구’가 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고요. 그래서 기록을 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시정조치요구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가 되면 사건을 송치받고 있습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서는, 현행 7항에 있습니다. 징계요구 할 수 있는 것을 삭제하고 ‘직무배제, 교체’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안에는 그대로 두면서 ‘직무배제, 교체’까지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서는 이런 시정조치요구에 더해 수사인권보호관을 두자는 내용을 뒤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안에서는 필요하면 타 수사관서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두고, 더 나아가서 각종 통지의무 그리고 통지에 대한 신청권 그리고 김한규 의원안의 특이한 사항은, 현행법에 보시면 ‘신고가 있거나’ 해서 신고자가 누군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한규 의원안에서는 신고자를 고소·고발 피해자로 제한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수사요청권입니다.

현행 제245조의8이고요. 검사는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문서로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항은 간명하게 돼 있어서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는 검사가 90일 안에 재수사요청기간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재수사기간은 원칙

적으로 3개월 그리고 직무배제·교체요구권을 두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많은 부분 비슷한데요, 현재는 재수사요청을 수사준칙에서 1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수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배제, 교체, 징계요구’ 가능한 규정까지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략적인 3개 안의 내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김한규 의원안처럼 직무배제, 교체, 징계요구권까지 모두 넣으실 거라면 직무배제와 교체는 많은 부분 유사합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보시면 3개월이라는 보완수사기간을 신설하고 있지만 현행 2항을 그대로 두어서 현행 2항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라는 부분과 3항의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제2항, 3항 간의 내용을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요구권과 관련해서는 김한규 의원안에서 신고자를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재수사요청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는데 그 재수사 결과 처리를 사경이 어떻게 처리할지 규정이 없고요. 그리고 사경이 불송치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재수사 내용에 대한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한규 의원안 같은 경우 불송치사건에 대한 경찰 재수사 후에 송치결정 또는 불송치결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처리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다만, 불송치사건에 대해서 불송치결정 한 건에 다시 불송치결정 하도록 하는 것은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다음에 김한규 의원안에서 1차 재수사 완료 후 2차 검사의 재수사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1차 재수사 후에 송치결정 할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2차 재수사하는 것은 내용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불송치결정 유지 시에도 수사기록의 송부하는 부분을 더 보완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 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검찰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입니다.

3개 안 모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는 일반 사경처럼 하도록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다음에 차규근 의원안에서는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요.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는 일반 사경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안은 개별 법률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한규 의원안에서는 특사경의 일반 규정을 준용하되 특사경이 검사에게 협력요청권을 할 수 있도록 협력요청권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특사경에 대해서는 행정 전문가로서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를 재고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한규 의원님 안에서 협력요청권을 신설하고 있는 점,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수사’장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개별 규정의 수사 규정을 정비하면서 그와 더불어 ‘충척’ 편이나 ‘공판’ 편에도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정리해 놓았구요.

20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제81조제1항 ‘구속영장의 집행’ 지휘와 관련해서 김한규 의원안과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서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를 삭제하고 ‘영장집행 촉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휘와 촉탁은 강제력이 있고 없고 간의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탁판사나 수명법관도 ‘지휘’가 안 되고 ‘촉탁’으로 내용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직무에 재판의 집행을 넣고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8조의2제1항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부분,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은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에 대해서 그 처분권을 검사를 삭제하고 검사와 협의해서 사경이 결정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제312조 3항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에 보시면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수사기관’이라고 있는데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는 못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의사일정 3항부터 5항까지의 법률안은 다음 주 초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용민 위원 기관 의견까지는 들으시는……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에 들으시는 걸로 하시지요.

○김용민 위원 기관 의견은 다음에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서.

○김용민 위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기우중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남희 김승원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중